

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·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96 호

「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
2020년 4월 일

서울특별시 중구 청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(안) 입법예고

1. 제정 이유

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 예방·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(안 제2조)

-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함
-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

나.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조)

-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
-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사항 심의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6일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감사담당관,
전화 : 02-3396-4415, E-mail : cya83@junggu.seoul.go.kr) 에게
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 및 구보에
게재되어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)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.

제3조(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)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.

1.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
2.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